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공무원 임용기준 강화〉

■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104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위원 조문상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 2 |
| 2. 검토의견 .....          | 4 |

##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나경원의원 등 2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10.
3. 회부연월일 : 2025. 12. 11.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복수국적자는 국가안보, 보안·기밀, 외교 등 분야에서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공무원은 공적 수임자로서 공권력의 행사와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직업임을 고려하여,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 공무원 임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 함(안 제26조의3).

### Ⅲ. 검토의견

#### 1.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 등 일부 분야 외에는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이하 “외국인등”이라 함)의 공무원 임용을 허용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외국인등의 임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임용 시 국가정보원의 신원조회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3).

| 현행                                                                                                          | 개정안                                                                                                                   |
|-------------------------------------------------------------------------------------------------------------|-----------------------------------------------------------------------------------------------------------------------|
|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국가기관의 장은 <u>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 <u>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u> -----. |
| <신설>                                                                                                        | 1. <u>대한민국 국민(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을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u>                                                                           |
| <신설>                                                                                                        | 2. <u>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에 임용하는 경우</u>                                                                                  |
|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u>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u>                  | ② -----<br>-----<br>-----<br>--- <u>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임용</u><br>을 제한하여야 한다.                                                |

|                                                                                                                                                                                                                                                                                                                                                                                                                                                                           |                                                                                                                      |
|---------------------------------------------------------------------------------------------------------------------------------------------------------------------------------------------------------------------------------------------------------------------------------------------------------------------------------------------------------------------------------------------------------------------------------------------------------------------------|----------------------------------------------------------------------------------------------------------------------|
| <p><u>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u></p> <p>1. ~ 3. (생략)</p> <p><u>&lt;신설&gt;</u></p>                                                                                                                                                                                                                                                                                                                                                                                   | <p>1. ~ 3. (현행과 같음)</p> <p><u>③ 국가기관의 장은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신원조회를 거쳐야 한다.</u></p> |
|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신원조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26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원조회를 받아야 한다.</p> <p>제3조(전문 분야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가 제26조의3 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26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문 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보직 변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

## 2. 검토의견

외국인(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및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sup>1)</sup>의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한적 허용),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외교나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에는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원칙적 허용).<sup>2)</sup>

이와 같은 현행법의 취지에 따라 특정한 공직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이하 “외국인등”

### 1) 「국적법」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 2)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①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이라 한다)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특정직공무원<sup>3)</sup> 중 일부 직군에서는 개별법에서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임용을 제한하고 있음.

### 《외국인등 공무원 임용 관련 법률》

| 구분          |                        | 외국인, 복수국적자 임용 여부            |
|-------------|------------------------|-----------------------------|
| 「국가공무원법」    |                        | 임용 가능(국가안보, 보안·기밀 관계 분야 제외) |
| 「지방공무원법」    |                        | 임용 가능(국가안보, 보안·기밀 관계 분야 제외) |
| 특<br>정<br>직 | 「교육공무원법」 4)            | 임용 가능(국가안보, 보안·기밀 관계 분야 제외) |
|             | 「소방공무원법」 5)            | 임용 가능(국가안보, 보안·기밀 관계 분야 제외) |
|             | 「외무공무원법」 6)            | 외국인 임용 제한(결격사유로 규정)         |
|             | 「경찰공무원법」 7)            |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용 제한(결격사유로 규정)   |
|             | 「군인사법」 8)              |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용 제한(결격사유로 규정)   |
|             | 「국가정보원직원법」 9)          |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용 제한(결격사유로 규정)   |
|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10) | 외국인 임용 제한(결격사유로 규정)         |

☞ 「교육공무원법」은 별도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등의 임용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소방공무원법」은 결격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3)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 4. 삭제

#### 4) 「교육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안은 외국인등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1) 대한민국 국민(복수국적자는 제외)을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정하여 2)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등의 임용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것으로, 공무 수행에 있어 국익 강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외국인의 공무담임권에 관한 기준 설정은 입법자의 재량사항이라 할 수 있으나,<sup>11)</sup> 현행법에서 이미 개정안의 취지대로 국가안보, 보안·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5) 「소방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6) 「외무공무원법」 제9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외무공무원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무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7)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 8)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9)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10)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기밀 등의 분야에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하고 있고, 외국인 임용도 교수 인력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외국인 국가공무원 임용 현황》

#### □ 연도별 현황(2017-2024년)

(단위 : 명)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 합계        | 168   | 166   | 167   | 174   | 171   | 173   | 183   | 191   |
| 임기제/전문경력관 | 5     | 4     | 5     | 5     | 5     | 4     | 2     | 5     |
| 특정직(교수)   | 163   | 162   | 162   | 169   | 166   | 169   | 181   | 186   |

#### □ 출신국가별 현황(2024)

(단위 : 명)

| 구분      | 합계  | 교수 | 부교수 | 조교수 | 일반직고위공무원<br>(일반임기제) | 전문임기<br>제 나급 | 전문경력관<br>다군 |
|---------|-----|----|-----|-----|---------------------|--------------|-------------|
| 합계      | 191 | 96 | 46  | 44  | 2                   | 2            | 1           |
| 과테말라    | 1   | 0  | 0   | 1   | 0                   | 0            | 0           |
| 그리스     | 1   | 1  | 0   | 0   | 0                   | 0            | 0           |
| 네덜란드    | 1   | 1  | 0   | 0   | 0                   | 0            | 0           |
| 네팔      | 1   | 0  | 1   | 0   | 0                   | 0            | 0           |
| 뉴질랜드    | 3   | 1  | 1   | 1   | 0                   | 0            | 0           |
| 덴마크     | 1   | 1  | 0   | 0   | 0                   | 0            | 0           |
| 독일      | 7   | 3  | 2   | 2   | 0                   | 0            | 0           |
| 러시아     | 1   | 1  | 0   | 0   | 0                   | 0            | 0           |
| 루마니아    | 1   | 0  | 1   | 0   | 0                   | 0            | 0           |
| 미국      | 83  | 43 | 22  | 14  | 2                   | 2            | 0           |
| 베트남     | 3   | 0  | 1   | 2   | 0                   | 0            | 0           |
| 벨기에     | 1   | 1  | 0   | 0   | 0                   | 0            | 0           |
| 불가리아    | 1   | 0  | 0   | 1   | 0                   | 0            | 0           |
| 스리랑카    | 1   | 1  | 0   | 0   | 0                   | 0            | 0           |
| 스웨덴     | 1   | 0  | 1   | 0   | 0                   | 0            | 0           |
| 시리아     | 1   | 0  | 0   | 1   | 0                   | 0            | 0           |
| 싱가포르    | 1   | 0  | 1   | 0   | 0                   | 0            | 0           |
| 영국      | 4   | 1  | 2   | 1   | 0                   | 0            | 0           |
| 오스트레일리아 | 6   | 4  | 1   | 1   | 0                   | 0            | 0           |
| 오스트리아   | 1   | 0  | 1   | 0   | 0                   | 0            | 0           |
| 우즈베키스탄  | 1   | 1  | 0   | 0   | 0                   | 0            | 0           |
| 이스라엘    | 1   | 0  | 0   | 1   | 0                   | 0            | 0           |
| 이탈리아    | 1   | 0  | 0   | 1   | 0                   | 0            | 0           |
| 인도      | 13  | 8  | 2   | 3   | 0                   | 0            | 0           |
| 인도네시아   | 1   | 0  | 0   | 1   | 0                   | 0            | 0           |
| 일본      | 8   | 5  | 1   | 2   | 0                   | 0            | 0           |
| 중국      | 26  | 14 | 4   | 7   | 0                   | 0            | 1           |
| 캐나다     | 17  | 8  | 4   | 5   | 0                   | 0            | 0           |
| 태국      | 1   | 1  | 0   | 0   | 0                   | 0            | 0           |
| 핀란드     | 1   | 0  | 1   | 0   | 0                   | 0            | 0           |
| 홍콩      | 1   | 1  | 0   | 0   | 0                   | 0            | 0           |

자료: 인사혁신처

11) 「대한민국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임권을 가진다.

또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외국인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담임권 등에서 차별적 소지가 있으므로,<sup>12)</sup>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참고로, 헌법기관별 외국인등의 임용과 관련하여 유사한 취지로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215090, 2025-12-10), 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법률안(2215097, 2025-12-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2215089, 2025-12-10)이 함께 발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개정될 경우 법률 간 정합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외국인등 공무원 임용 관련 법률안 주요내용(나경원의원 대표발의)》

|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내용                                                                                                                                                                                                                                           |
|----------------------------------|------------------------------------------------------------------------------------------------------------------------------------------------------------------------------------------------------------------------------------------------|
| 국가공무원법<br>일부개정법률안<br>(2215104)   | <b>[외국인·복수국적자(공통)]</b><br>◦ 임용 요건 강화<br>- 대한민국 국민(복수국적자 제외)을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br>-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 외국인등의 공무원 임용을 허용<br>◦ 임용 시 국가정보원 신원조회 의무화                                                                                            |
| 법원조직법<br>일부개정법률안<br>(2215090)    | <b>[외국인]</b><br>◦ 임용 요건 강화<br>-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에는 그 임용이 곤란하거나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한 위험성이 없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규칙(대법원, 중앙선관위, 헌재)으로 정하는 경우<br><b>[복수국적자]</b><br>◦ 임용 시 및 정기적(4년 이내) 신원조사 의무화<br>◦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분장 조정 등 조치 |
| 선거관리위원회법<br>일부개정법률안<br>(2215097) |                                                                                                                                                                                                                                                |
| 헌법재판소법<br>일부개정법률안<br>(2215089)   |                                                                                                                                                                                                                                                |

12)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인사혁신처는 현행법은 개정안의 취지대로 국가안보, 보안·기밀 등의 분야에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이미 제한할 수 있어 입법실익이 크지 않고,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동일하게 제한적으로만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게 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가정보원은 「보안업무규정」 제36조<sup>13)</sup>에 따라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신원조회(안 제26조의3제3항)”을 “신원조사”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재외동포청은 외국인등의 공무원 임용이 허용되는 전문분야(안 제26조의3제1항제2호)’의 범위가 모호하여 포괄적 규제로 인한 재외동포의 공직 임용 범위가 대폭 축소될 우려가 있고,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동포 권익신장 등)이나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현행법과의 정합성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13) 「보안업무규정」 제36조(신원조사)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충성심·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삭제

③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1. 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삭제

4.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5. 삭제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 문 의 처        |
| 02)6788-5342 |